##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51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 남인순·김경만·김승원

민형배 • 박성준 • 박홍근

안규백 · 양정숙 · 유재갑

윤준병 • 이광재 • 이규민

이상헌 • 전혜숙 • 정춘숙

최혜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검사기관의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 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 품에 한정한다)을 2곳 이상의 다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 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검사항목은 제2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 ·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그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
	검사)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
	한 영업자가 「식품・의약품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
	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
	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
	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
	다)을 2곳 이상의 다른 자가품
	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
	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
	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
	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
	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은 제23조제2항 단서 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성 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 당 시험·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 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

현·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시험건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